

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변경 안내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

- KB 차이나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집합투자기구 명칭: KB 차이나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기구 명칭: <u>KB 통중국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u>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 ~ 8. 생략 9.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가. KB 차이나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나. KB 중국본토 A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다. KB 통중국 고배당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제2조(용어의 정의) 좌동 1. ~ 8. 좌동 9.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가. KB <u>통중국 그로스</u>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나. KB 중국본토 A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다. 삭제 라. <u>KB 통중국 4차산업 증권 모투자신탁(주식)</u>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및 모자형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KB 차이나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으로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1. ~13. 생략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 및 모자형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 <u>KB 통중국 그로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u> "으로 한다. ② 좌동 ③ 좌동 1. ~13. 좌동 14.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 15.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 16.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p><u>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u></p> <p><u>17.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u></p> <p><u>18. C-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u></p> <p><u>19.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전용 집합투자증권으로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증권</u></p>
	<p>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① 생략</p> <p>1. ~13. 생략</p> <p>②. ~ ⑤ 생략</p>	<p>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① 좌동</p> <p>1. ~13. 좌동</p> <p><u>14.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u>15.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u>16.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u>17.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u>18. C-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u>19.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②. ~ ⑤ 좌동</p>
	<p>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생략</p> <p>1.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9호 나 목 및 다 목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의 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p> <p>2. 생략</p>	<p>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좌동</p> <p>1.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9호 나 목 및 라 목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의 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p> <p>2. 좌동</p>
	<p>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생략</p> <p>1. ~ 5. 생략</p>	<p>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좌동</p> <p>1. ~ 5. 좌동</p> <p><u>6. 투자신탁 변경일(2018년 05월 16일) 이전 1월간 및 이후 1월간</u></p>
	<p>제39조(보수) ①. ~ ②. 생략</p> <p>③ 생략</p> <p>1. ~ 13. 생략</p>	<p>제39조(보수) ①. ~ ②. 좌동</p> <p>③ 좌동</p> <p>1. ~ 13. 좌동</p> <p><u>14.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u></p> <p><u>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8.5</u></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3.5</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p> <p>15.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8.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2.55</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p> <p>16.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8.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8.5</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p> <p>17.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8.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4.25</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p> <p>18. C-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8.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8.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p> <p>19.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8.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4.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1,000분의 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15</p>
	<p>제40조(판매수수료) ① 생략</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3.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5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직판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W 클래스 집합투자증</p>	<p>제40조(판매수수료) ① 좌동</p> <p>② 좌동</p> <p>1. ~ 2. 좌동</p> <p>3.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5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직판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W 클래스 집합투자증</p>

권 및 C-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4. 생략

권, C-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4. 좌동

③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후취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환매금액(집합투자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 별로 다음 각 호의 종류 집합투자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A-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5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직판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2.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⑤제2항의 선취판매수수료 및 제4항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제4항 제2호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p>제41조(환매수수료) ① 생략 ② 생략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A_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p> <p>가. 30일 미만: 이익금의 10%</p> <p>2.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5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직판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p> <p>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6년 05월 27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p> <p>i)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나. 2016년 05월 30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p> <p>i) 30일 미만: 이익금의 10%</p> <p>③. ~ ④ 생략</p>	<p>공시한다.</p> <p>제41조(환매수수료) ① 좌동 ② 좌동 1.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A-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W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A_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p> <p>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8년 05월 16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p> <p>i) 30일 미만: 이익금의 10%</p> <p>나. 2018년 05월 17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p> <p>2. C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5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F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직판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G 클래스 집합투자증권</p> <p>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6년 05월 27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p> <p>i) 90일 미만: 이익금의 70%</p> <p>나. 2016년 05월 30일부터 2018년 05월 16일까지 환매청구 하는 경우</p> <p>i) 30일 미만: 이익금의 10%</p> <p>다. 2018년 05월 17일부터 환매청구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p> <p>3. S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S-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P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C-퇴직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및 C-퇴직e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p> <p>③. ~ ④ 좌동</p>
<p>※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변경</p>		

- KB 멀티매니저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p>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 ~ 8. 생략 9.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가. KB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나. 삭제 다. KB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p>제2조(용어의 정의) 좌동 1. ~ 8. 좌동 9.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가. KB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나. 삭제 다. KB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라. KB 차이나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마. KB 인디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바. KB 러시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0. 생략	라. KB 통중국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마. KB 인디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바. KB 러시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0. 좌동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변경	

- KB 연금 브릭스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 ~ 7. 생략 8.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가. KB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나. 삭제 다. KB 러시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라. KB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마. KB 인디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바. KB 차이나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9. ~11.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좌동 1. ~ 7. 좌동 8.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가. KB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나. 삭제 다. KB 러시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라. KB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마. KB 인디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바. KB 통중국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9. ~11. 좌동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변경		

- KB 연금 코차이나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 ~ 7. 생략 8.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가. 삭제 나. KB 차이나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다. KB스타 중국본토 CSI300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라. KB 연금플랜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9. ~ 10.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좌동 1. ~ 7. 좌동 8.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가. 삭제 나. KB 통중국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다. KB스타 중국본토 CSI300 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라. KB 연금플랜 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9.~ 10. 좌동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변경		

- KB 퇴직연금 브릭스4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p>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p> <p>1. ~ 7. 생략</p> <p>8.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p> <p>가. KB 연금플랜 국내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p> <p>나. KB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p>다. 삭제</p> <p>라. KB 러시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p>마. KB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p>바. KB 인디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p>사. KB 차이나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p>아. KB 마이플랜 장기 국공채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채권)</p> <p>9.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좌동</p> <p>1. ~ 7. 좌동</p> <p>8.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p> <p>가. KB 연금플랜 국내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p> <p>나. KB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p>다. 삭제</p> <p>라. KB 러시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p>마. KB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p>바. KB 인디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p>사. KB 통중국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p> <p>아. KB 마이플랜 장기 국공채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채권)</p> <p>9. 좌동</p>
	<p>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생략</p> <p>1. 생략</p> <p>2. KB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KB 러시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KB 러시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KB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KB 인디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및 KB 차이나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미만으로 한다.</p> <p>3. 생략</p>	<p>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좌동</p> <p>1. 좌동</p> <p>2. KB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KB 러시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KB 러시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KB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KB 인디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및 KB 통중국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미만으로 한다.</p> <p>3. 좌동</p>
<p>※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변경</p>		

- KB 하이브리드 알파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p>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p> <p>1. ~ 8. 생략</p> <p>9.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p> <p>가. KB 이머징 국공채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p> <p>나. 삭제</p> <p>다. 삭제</p>	<p>제2조(용어의 정의) 좌동</p> <p>1. ~ 8. 좌동</p> <p>9. "모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p> <p>가. KB 이머징 국공채 인컴 증권 모투자신탁(채권)</p> <p>나. 삭제</p> <p>다. 삭제</p>

	라. KB 밸류 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마. 삭제 바. KB 차이나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사. KB 중국본토 A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아. KB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자. KB 러시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차. KB 인디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카. KB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타.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모투자신탁(상품-파생형) 파. KB 한국 대표그룹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하. KB스타 막강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라. KB 밸류 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마. 삭제 바. KB 통중국 그로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사. KB 중국본토 A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아. KB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자. KB 러시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차. KB 인디아 대표성장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카. KB 인디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타. KB MKF 원자재 특별자산 모투자신탁(상품-파생형) 파. KB 한국 대표그룹주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하. KB스타 막강 국공채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변경		

2. 변경(예정)일 : 2018년 05월 16일